

관보제재

서울특별시

100 744 서울시 중구 네평로가 31번지 / 전화 (02) 3707-9851~2 / 전송 3707-9859
처리 부서 : 치수과(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별관제1동 6층) 나 영 관

문서번호 치수 58720-676

시행일자 1998. 5. 1.

(경유) 제 1 안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고시공고
1998. 5. 01
제1998-
2(3호)

취급		시	장
보존		한	
무시장	전결		
하수국장	신지	지방위제난관리국장 (in)	
치수과장	0	제난관리과장 신성무담당관실 주발	
기안	치수계장		협조

제목 한강수중보(잠실, 신곡) 1종시설물 지정

결재
부시장

1. 한강관리(사) 치수58720-202(98. 4. 16)호와 관련입니다.
2.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 수중보(잠실, 신곡)는 서울시민의 상수원 취수와 수위조절기능을 유지하고,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소요수심 확보등을 위한 중요시설물이나
3. "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①"에서 잠실, 신곡수중보는 적할하천의 부속시설로 분류하여 2종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어
4.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,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이 발생될 시 공중에 위협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"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③"에 의거 1종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자 따로붙임 공고(안)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따로붙임 : 1) 공고(안) 1부.

- 2) 대상시설물 지정신청서(한강관리사업소장) 1부
- 3) 시설물 관리대장 1부
- 4) 안전점검 보고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장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공고제1998-253호
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공고

1.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한강내 수위유저시설인 잠실 및 신곡수중보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,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8. 5. 6 .

서울특별시장

가.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공고

하천등급	대상시설명	종 별	시 설 규 모
직할하천 (한 강)	잠실수중보	1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체 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고정보 650.5m -가동보 200.0m(36m×3.7m×5문) -어 도 22.5m ○ 배수갑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주 4.0m×11.2m×14.1m - 문벽 36.0m×5면×3.7m - 조작실 9.2m×8.5m×4.6m ○ 보 접속부 보호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정보(강북)하류측 약120m - 가동보(강남)하류측 약160m

하천등급	대상시설명	종별	시설규모
적활하천 (한강)	선곡수중보	1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체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경보 883.0m - 가동보 124.0m(20m×5m×5문) ○ 배수갑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주 17.7m×4.0m×11.5m - 문벽 20.0m×1련×5.0m - 연속도교 120m×7m(2차선) ○ 보 접속부 보호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경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백마도측 351.4m · 일산계측 308.0m - 가동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선곡측 124.0m · 백마도측 98.0m